발송번호: 9-5-2018-043486695
발송일자: 2018.06.27.
제출기일: 2018.08.27.

YOUR INVENTION PARTNER

특 허 청

의견제출통지서

출 원 인	성 명	
	주 소	
대 리 인	성 명	
	주 소	

출 원 번 호	40-2017-0168004
상 품 류	제 41 류

1.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(관계법령 : 상표법 제54조 및 제55조,
의견서 :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,
보정서 :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)

2. 상기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월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. 기간연장은 2회 이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, 기간연장신청서는 지정(연장)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
거 절 이 유

참고 : 상표견본이미지

T-ARA

티아라

(※ 본 통지서의 상표견본 이미지는 출원서에 첨부된 상표견본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
[거절이유]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

이 출원상표 'T-ARA, 티아라'는 널리 알려진 저명한 연예인 그룹명칭을 소속사에서 출원한 경우에 해당되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출원인(소속사)이 그룹 구성원의 동의서 또는 상표권 소유에 관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.

○ 지정상품 : 전부. 끝.

2018.06.27.

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

상표심사3과 심사관 김미경 _____

<< 안내 >>

1. 상품류 구분 또는 지정상품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전자문서는 매건 4,000원, 서면은 매건 14,000원의 보정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
2. 보정 후 상품류 개수가 보정 전의 상품류 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상품류 개수마다 추가 보정료를 납부해야 하며, 추가 보정료는 전자문서의 경우 매건 62,000원, 서면의 경우 매건 72,000원입니다.

3. 보정료는 보정서 제출 후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'등록료·수수료·등록세·인지세 납부안내서(영수증)'의 납부자번호란에 기재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납부일이 공휴일(토요휴무일 포함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.

4. 보정료는 국고수납은행(대부분의 시중은행) 또는 인터넷지로(www.giro.or.kr)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보정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정료에 상응하는 통상환(우편환)을 동봉하여 제출하면 특허청에서 대신 납부해드립니다.

5. 본인의 지정상품과 타인의 선출원·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동일·유사 여부는 유사군코드를 참고하여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.

6. 타인의 선출원·선등록 상표 지정상품의 유사군코드 확인은 「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(www.kipris.or.kr)」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지정상품의 유사군코드는 심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오분류가 있을 수 있고 추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「특허로」고객센터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담당 심사관 지정 알림, 마감기한 알림 등 각종 민원처리 사항을 이메일과 휴대폰(SMS)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
※ 이 통지서의 거절이유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특허청 ☎ 042-481-8253(담당심사관 김미경)로, 보정서식 또는 절차에 대하여는 특허고객상담센터 ☎1544-8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4동 (둔산동, 정부대전청사)